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23.(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33호
-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구민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대상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실내공기질 측정(안 제5조 ~ 제6조).
- 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7조).
- 마.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안 제8조).
- 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의 교육(안 제9조).
- 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안 제10조).
- 아. 보고 및 검사 보완(안 제11조).
- 자. 개선명령(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깨끗한 공기질 관리와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적용대상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실내공기질 측정(안 제5조 ~ 제6조).
-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7조).
- 5)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안 제8조).
- 6)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의 교육(안 제9조).
- 7)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안 제10조).
- 8) 보고 및 검사 보완(안 제11조).
- 9) 개선명령(안 제12조).

다. 검토의견

-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보다 깨끗한 공기질 관리에 힘쓰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55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 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2020. 5. 26.>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 3. 22., 2014. 1. 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본조신설 2013. 6. 12.]

[제목개정 2015. 12. 22.]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2018. 4. 17., 2019. 4. 2.>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
-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2020. 5. 26.>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5. 12. 2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1.] [환경부령 제1169호, 2025. 4. 11., 타법개정]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오염물질(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₂;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₂;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벵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시행 2024.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123호, 2024. 3. 15., 일부개정]

제7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같다.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7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 ₁₀ µg/m ³)	초미세먼지 (PM _{2.5} µg/m ³)	이산화탄소 (CO ₂ ppm)	포름알데히드 (HCHO µg/m ³)	총부유세균 (CFU/m ³)	일산화탄소 (CO ppm)
다중이용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 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₁₀)의 농도가 200µg/m³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